

주류자판기, 난공불락 철옹성일 수는 없다

규제만이 능사인가. 국민건강에 민감한 담배, 주류자판기 품목에 대해 관련부처는 규제밖에 대안이 없다는 듯 철옹성 같은 방어막을 굳게 치고 산업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주류자판기의 경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행위를 주세법 고시에 의해 금지시키고 있어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규제의 제일 명분은 물론 청소년 보호문제이다.

하지만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해 청소년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도 규제만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과당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관련부처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이외에도 주류유통을 확대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주류자판기 특성상 일반유통과는 차별화해 꼭 필요한 타킷 로케이션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올바른 반대명분이라 할 수 없다.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 일본처럼 주류자판기 유통의 독자성을 인정해 달라라는 산업계 입장과는 달리 관련부처는 주류유통은 어쨌든지 억제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를 통한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와 합법적인 인정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미 협회에서는 주류자판기 시장 영역을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도 일조하고 청소년 보호, 주류 유통기로서로서의 효율성 증대라는 총체적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가지고 재경원 소비세과, 국세청 소비세과 등에 산업계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주류자판기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유통장비로서의 독자적 효용가치를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관련부처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주류유통수단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과연 주류자판기가 필요한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즉 현재처럼 기존 유통수단을 통해 주류를 구입하기 쉬운 상황에서 자판기가 뭐가 필요한가 하는 시각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류자판기가 독립적인 유통 장비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그 필요성이 산업계 이외에서도 절실히 제기되려면 주류판매전문상 제도 도입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류 유통을 억제하고 주류 유통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류유통전문상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행 주류 유통수단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주류를 구입하는 과정은 과거보다 무척 번거로워 지게 된다. 가까운 소매유통에서 쉽사리 구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적지 않게 발품을 팔아 가며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하에서는 주류자판기의 필요성이 절로 증가하게 된다. 소매유통이 못 미치는 곳곳의 타킷 로케이션은 자판기로나마 소화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시장에 있어 주

류자판기 시장이 활성화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면에서 하루 빨리 주류판매전문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의 가능성 역시도 그만큼 높아진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도 장기적인 계획일 뿐 결코 쉽게 관련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다.

종합해 볼 때 주류자판기의 도입환경은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산업계는 좀더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할 듯 하다. 미래적으로 볼 때 주류자판기는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국민정서에서 민감한 주류의 정책변화는 서서히 분위기를 잡아가고, 관련법의 변화를 주목하고, 규제완화 필요 명분을 하나 하나씩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주류자판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 초점에서는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재경원과 국세청에 건의를 진행한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게재된 내용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의 명분들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따라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즉 수단은 목표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익적이어야 하며 (필요성의 원칙), 침해하는 사익과 공익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협익의 비례원칙)

-주세법과 주류양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일단 세금의 공정한 부과와 청소년 보호 등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자판기에 의한 주류판매라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 할수 있는 사유가 된다 할수 있음.

■ 주류 자판기 건전한 시장육성 방안 건의안

1. 관련규정

주세법 고시 8항 주류소매업자 의무조항

8. 주류 소매업자(의제 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수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 주류소매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야한다.

나. 탁주, 약주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소매업자 및 조합 주류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다.<삭제>

라.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마.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가계소비자에 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2. 법적규제의 문제점 검토

<비례원칙>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권리제한의 수단은 비례원칙에

-그러나 그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규제의 수단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에 위배되는 정당한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현재의 주세법과 그 위임고시의 내용은 비례원칙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판매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그 목적, 즉 세금의 공정한 부과, 청소년 보호에 적합 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판매의 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음.

-즉 기술적으로 판매량을 기록하는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과세자료를 얻을 수 있고, 성인인식장치에 의한 청소년 구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판기에 의한 판매를 전면 규제한다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3.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당위성

1) 주류자판기, 성인인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이용 완전 차단

-개인의 기호품인 주류는 기존 유인 유통구조에서 미성년자 판매를 규제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한 주류자판기는 근본적으로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율 저하에 크게 공헌 할 수 있고 성인전용자판기로서 독립적인 존재가치가 높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람에만 의존하는 제도책 보다는 근본적으로 청소년 이용을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적용이 최선의 방법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청소년 보호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함.

2) 주류자판기로 인해 음주율 증가 및 국민건강 등에 끼치는 위해요인이 크지 않다.

- 주류는 기호식품으로 음주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음주를 선택하는 것이지 일개의 자판기를 통해 음주욕구가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음. 더욱이 주류자판기는 일반 유통처럼 모든 주류를 취급하기보다는 알콜도가 높지 않은 맥주, 전통주 등의 소량포장 단위의 주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 음주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음주자 입장에서 볼 때 주류 구입을 위해 신분증인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주류자판기 이용을 오히려 꺼려하게 될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주류자판기는 시의적절한 장소에서 꼭 주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인판매를 대신하여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지 우려할 정도의 음주율 증가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 요인이 작용하지 않음.

3) 무인 유통기기로서의 편리성 제고 측면

- 또한 유통구조의 대형화에 따른 소매점포의 감소,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 요인과 점차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라이프 싸이클 변화요인을 고려할 때 유인판매와는 차별화된 무인판매 구조를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4) 무자료거래 근절 및 주류유통 선진화의 첨병 역할

- 현행 주류유통 시장은 무자료거래 횡행으로 많은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할인매장의 도매·덤핑행위, 유통상을 통하지 않은 제조사와의 직거래 등의 관행으로 주류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져 있는 상태.

- 주류자판기는 카운터 기능의 설정, IC카드의 도입을 진행한다면 투명한 매출입 체크가 이루어져 무자료거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류 덤핑행위 근절

과 제조사와의 직거래 관행 등의 편법유통 행위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

- 결과적으로 주류자판기는 많은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류유통 구조를 선진화하고 유통구조의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할 수가 있음.

5) 주류자판기의 전국 일본시장의 예

- 1999년 초 시점 기준, 전국 153,100대의 주류자판기가 설치 보급되어 있는데 아웃 도어용이 107,100대(약 70%), 인도어 용 46,000대(약 30%)이고 전체 주류판매의 5.6%가 자판기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 일본에서 주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모두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가진 자들이 자동판매기의 관리인이 되는데 주로 주류 판매점 점두에 주류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균 2~3대 정도가 놓여 있음.

- 또한 자동판매기의 평균 매상은 월간 대당 15~16만 엔 정도이고 주류판매점의 가두에서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현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의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종래는 주류판매점 입지수에 있어서는 규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일단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2000년 6월 1일부터는 종래의 자동판매기 설치는 인정되지만(전국 소매판매조합 중앙회에 가맹되어 있는 주류판매점 자체 대상) 연령을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한 이른 바 개조자동판매기 자체만이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 현재 일본에서는 20세 이하에게는 주류판매가 법률로 금지돼 있어서 WHO(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의해서 3년전부터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주류자동판매기는 운전 면허증을 읽는 연령식별장치를 부착한다든가 노점에서 대면확인을 하고서 발행하는 ID카드를 읽는 연령식별장치를 부착해 나가고 있는 추세.

6) 자판기 산업 발전기회 박탈 측면

- 산업계는 주류자판기의 규제조치로 커피, 캔자판기 다음 가는 성인용 자판기 시장을 활성화시킬 기회를 잃고

있음. 최근들어 주력품목인 음료자판기 시장이 크게 부진한 현실에서 주류, 담배 등의 성인용자판기 시장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

-주류자판기 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계는 기존의 캔자판기 기술을 변형해 주류자판기를 생산 출시 할 수 있음으로서 기존 설비와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새로운 신규수요 창출에 따른 자판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성인인식장치 도입 등 산업계 자율대책 방안

1) 자율 규제 추진 방향

-그동안 주류자판기 설치시 가장 큰 문제요인인 청소년 음주문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는 신분증을 이용한 성인인식장치를 개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를 주류자판기에 장착 의무화해 완전 성인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심야 12시~오전 5시 까지는 가동 OFF기능을 설정함으로써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는 심야시간대 음주유구 조장과 음주사고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유통기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

-이외에도 성인전용 주류 ID카드 시스템의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해 유통기기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연구해 나갈 예정.

2) 성인인식장치 어떤 기술인가

-이 시스템은 우선 성인기호품 자동판매기에 있어 신분증의 특수 기능과 생년월일을 인식하여 성인연령으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가진 미성년자, 17~18세로 주민등록증은 있으나 미성년자 들에게 담배, 술 등의 성인기호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로서, 신분증 진위판결, 고객의 성인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위변조된 신분증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적외선 센서로서 신분증에 인쇄된 문자, 숫자 등을 감지함으로써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고객의 성인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은 신분증에 인쇄된 생년월일 숫자를 센서로 판독하게 됨.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신분증을 통한 연령인식장치를 상용화하고 자판기를 통한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성인인식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육성을 위한 철저한 산업계 자율대책을 구축해 놓고 있음.

3) 성인인식장치 채택한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시 기대 효과

성인인식시스템을 채택, 근본적으로 청소년 이용을 차단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실시한다면 현행 면식(面識)에 의존하는 유인판매를 대체하는 효과적인 유통수단으로 청소년 음주를 오히려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5. 제안자의 주장

성인인식장치 도입을 통한 산업계 자율대책이 주류자판기 설치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현행 규제를 풀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 유통기기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봄.

6. 법령개정방안 예시

-현행 주세법에 있어 주류자판기를 통한 무인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자판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세법 고시 8항 주류소매업자 의무조항 중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목 삭제.